



## 망간 가스가 발생하는 용접작업으로 인해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았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사건번호 서울행법 98구7175

### [요지]

원고들은 20여 년간 망간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 증상인 성격변화, 기억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1의 경우 *Magn*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상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들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망간중독의 경우와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외증의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유]

#### 1. 처분의 경위

##### 1) 근무 경력과 증상

① 원고 1: 1977년부터 1997.2월까지 20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 2: 1976년부터 1996년 10월까지 20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③ 원고 3: 1997년 8월부터 1996년 9월까지 20년 이

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 2) 진단 경위 및 원고들의 증상

① 원고 1: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성욕감퇴, 심한 피로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 결과 망간뇌증으로 판정하였다.

② 원고 2: 심한 두통, 기억력 저하, 손·발의 떨림, 손가락·팔·다리 등 부위의 경직 현상, 행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 결과 망간뇌증으로 판정하였다.

③ 원고 3: 집중력 저하, 성욕감퇴 및 팔·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 결과 망간뇌증으로 판정하였다.

##### 3) 피고의 처분

원고들의 용접작업 경력, 요증 및 혈중 망간농도, MRI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망간에 폭로된 점은 인정되나, 신경학적 검사상 망간중독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징후가 없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을 망간중독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아크 용접과 CO<sub>2</sub> 용접 등의 방법으로 교량에 설치되는 철제상자의 내부에서 용접부위를 내려보는 자세로 5명 가량의 용접공이 함께 용접작업을 하여 왔고, 1일 평균 8내지 9시간, 1월 평균 25일 가량 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들이 사용한 아크 용접봉의 피복이나 CO<sub>2</sub> 와이어의 내부에 망간이 포함되어 있어 용접 작업시 망간이 포함된 연기가 발생하는데, 작업시 이동식 환풍기를 사용하지만,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철제상자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게 된다.

원고들은 1987년에서야 비로소 방진마스크를 지급받아 작업시 착용하였고, 1989년에서야 방진마스크의 필터를 지급받아 착용할 수 있었다.

원고들에 대하여 뇌 MRI 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우울한 정동의 변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신경심리검사결과 globus pallidus와 antetior commissure를 포함한 basal forebrain 손상이 나타나는 전두엽 기능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뇌 MRI 검사 결과 망간중독의 소견인 T1 강조영상에서 양쪽 기저핵 및 cerebral peduncle 부위에서의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1은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양상을 보이며, 원고 2, 3은 수지진전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들의 망간 노출 경력 등을 고려해서 각각 망간뇌증과 망간중독의증으로 진단하였다.

## 2)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은 20여년간 망간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과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Myerson 검사상 양성 반응과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상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에 대

한 뇌 MRI 검사 결과 망간중독의 경우와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외증의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망간에 폭로된 사람 중 약 5% 가량이 파킨슨증후군 또는 편측진전마비 등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과 약 9% 가량이 정신증상으로 각이환되는 점을 보아 망간중독 환자의 경우 망간에 대한 폭로를 중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들의 망간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정신 증상보다 훨씬 악화된 정신증상 또는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원고 1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은 정신증상 이외에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으로 이환 되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망간중독증은 체내에 축적된 망간의 배출, 정신증상에 따른 약물의 투여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한 약물 투여 등으로 그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망간중독증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증상이 망간의 폭로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그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